

기안자 지방행정주사 권희번호 공보필요불필요
정영섭 341

보입담임 인사과장 내부국장 시 1부시장 시



신경



집조자 시경과장 *pin*

보통

서명 *섭*

년한

기년월일 1964. 7. 10. 시년월일 1964. 7. 23 동제관
분류기호 서울특별시 예기 제 15호 (2.4086)
문서번호 사역인 201

장서기

경수참 유신조 수신지 참조

발신 서울특별시

세목 임용권 위임(5급 및기능직)에 대한 인사처리 (예규)

1. 서울특별시 규칙 제399호(지방공무원 임용권 위임 64.2.26)

및 서울특별시 훈령 제163호(국가공무원의 임용권 위임 63.9.17) 및
서울특별시 훈령 제173호(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 위임 64.2.10)에 의
거 구 및 사업소 (공무원교육원, 농촌지도소, 노동위원회의 사무국 포함)

에 속하는 5급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으로 인한 구
간 전보 사업소간 전보와 구와 사업소간 직상오전보에 대한 인사처
리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할것.

2. 인사전보 규정

가. 5급공무원의 구간(공무원교육원 포함) 인사전보는 인
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6조(전출, 전입동의 요구서식) 및
제17조(전출, 전입 동의서식)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의 동의를 받아

서울특별시

1528

6:2

375

467

어 령하고 별지 서식에 의거 5월이내 시장에게 보고
하여야 한다.

나.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보 및 전출, 전입
의 요구 및 동의를 할수 없다.

(1) 국가공무원법 제1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17조의 전보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자

(2) 정원에 맞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공정한 인사관리
에 췌배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다. 기능직 공무원의 구간 및 사업소간과 구와 사업소 상
호간의 전보또 권 가합 및 나합에 의하여 처리한다.

라. 전 나합 각호의 규정에 췌배된인사전보는 시장이 합
방적으로 취소할수 있다.

마.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소속 장관을
담미하는 공무원에 대한 합어전입 임용 및 전출 동의는 시장의 사전
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바. ^{이 예규} ~~본 규정~~을 췌배한 경우는 인사 담당자를 문책한다.

수신처

"공"

내무 1-82 내무 1-9 내무 1-34 내무 1-82 내무 1-82

내무 1-82

(서식 1)

기 관 명

분류기호

1964. . .

수 신 내무국장

참 조 인사과장

제 목 전보발령 보고(말어전입)

1.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이있었기 보고합니다.

2. 발령사람

(권 소속)

(직급)

(성명)

0 0 구(사업소) 전입을 명함.

0 0 과 근무를 명함.

1964. . .

발 령 권 자

유 절 갈어 등역서 사본 1통 첨부

발신인 직, 성명 :

(인)

(제 16조 서식)

別紙 第17號書式

~50~

公務員轉入, 轉出同意要求書

(기 관 명)

분류기호

19. . .

수신

참조

제목

공무원 전입 전출 동의 요구

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 조의
 주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무원 전입 전출을 요구하나
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인 적 사 항	소속			
	성명	직명	생년월일	소재지
	본적			
	원주소			
전 입 후				

우첨: 인사기록카드

(16절기)

○ ○ ○ 강 ○ ○ ○

492

(제17조 서식)

別紙 第18號書式

公務員轉出轉入同意書

(기 관 별)

분류기호

수신

참조

제목 공무원 전출, 전입 동의

공무원인사기록및사무처리규칙 제 조의 규정
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-공무원전입, 전출요구에 대한
동의여부를 통보합니다

	소속			
	성명	직급	생년월일	제과과년
	본직			
	주소			
동의				
부동의				
부동의 이유				

○ ○ ○ 강북 ○ ○ ○
~ 4 ~

(16점)

65

473

65